

- (2) 임용권자는 위의 (가)부터 (바)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위의 (다)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(3) 위의 (나)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한 날로 한다.
- 다) 인사발령 통지서 등(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」 제18조)
- (1) 교육공무원은 전보, 강임, 면직, 징계, 직위해제, 휴직, 복직, 호봉재획정, 승급, 전출, 전입의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, 위촉 또는 해임,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(서식 I -28,[별지 22호 서식])를 교부하여야 한다.
 - (2)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직위해제, 직권에 의한 면직·강임 또는 휴직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설명서(서식 I -29, [별지 23호 서식])를 첨부하여야 하며,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([별지 5호 서식])를 첨부하여야 한다.

2) 처리과정 및 절차

시행기관	처리내용	처 리 방 법	유의사항
학교	면직내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서류접수 및 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원면직: 사직원(자필) - 당연퇴직: 법원판결문 사본 - 직권면직: 징계위원회 의견서 또는 징계위원회 동의서, 진단서, 직권면직사유 설명서 또는 직권면직 사유를 증명할 서류(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근거) - 정년퇴직: 가족관계등록부(기본증명서) ◦ 면직내신 기안 및 시행문 발송 	
교육지원청	면직발령 결과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학교장 시행문 접수, 결재 ◦ 구비서류 타당성 검토 ◦ 비위사실 여부 확인 ◦ 면직발령 기안, 결재 ◦ 면직발령 보고 및 통보(교육감, 당해학교) ◦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◦ 인사기록카드, 발령대장, 현원대장 정리, 보관(이관) 연금신청(본인 → 공무원연금공단) ◦ 공무원증 회수 ◦ 의원면직자 포상 추천(2월말, 8월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비위사실 여부 확인 후 면직발령 -감사원장(사회복지 감사국 제5과) -해당지방경찰청 검사장 -해당경찰서장 (수사과장) -해당 감사과(팀) 및 도 감사관 ◦ 면직 발령 후 3일 이내
도교육청	보고사항 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교육장 시행문 접수, 결재 ◦ 인사기록카드, 현원대장, 발령대장 정리 	

※ 처리기관: 교사 · 교감-교육지원청, 교장-도교육청